

## 2026년 프리 팁스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

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을 팁스(TIPS) 기업으로 발굴·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프리 팁스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\* TIPS :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

2026년 1월 7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본 모집공고는 프리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, 프리 팁스 참여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'26년 상반기 공고 예정입니다.

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 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① 실명 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
② 실명 등록 경로 : [www.siren24.com](http://www.siren24.com) ☎ 1577-1006

\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
1

### 사업개요

#### 사업목적

- 투자자로부터 엔젤 투자(Seed)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팁스(TIPS) 창업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 선정·운영

#### 선정규모 : 1개 기관

#### 운영기간 : '26년 ~ 최대 3년(2+1년)

\* 운영기간 내 중간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하며, 사업 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
#### 지원예산 : 6억원 내외

\* 지원예산은 예산심의·확정 결과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

## 2

##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### □ 신청 자격

- 기업 선정평가·관리,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 창업기업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기관

#### <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>

구분	신청 자격
공공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『공공기관운영법』 제4조(공공기관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</li> <li>• 『지방공기업법』 제2조(적용범위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</li> <li>• 『지방출자·출연법』 제2조(적용대상 등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</li> </ul>
민간 기관 (단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</li> <li>•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</li> <li>• 『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</li> <li>•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·협회·단체 - 단,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*이 "B" 이상이어야 함</li> </ul> <p>*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<b>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</b> 유효기간 내 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 기준</p>

### □ 신청 제외 대상

-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

-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
-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- 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- ⑥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
-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 □ 창업지원사업 역량 및 전문성

- (평가·관리) 창업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, 사업비 집행·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관
  - \*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 경력은 사업수행확인서 또는 협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
- (지원역량) 국내·외 VC 등과 투자 네트워크 구성·운영,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관

### □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

- (전담조직 설치) 프리 팁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관기관 내 독립 부서(조직)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해당 부서 배치
    - \* 전담조직은 신청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, 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창업지원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
  - (전담조직 구성) 전담조직의 장(1인)과 전담인력(3인 이상)으로 구성
    - 전담조직의 장 :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 (또는 주관기관의 장)로서 창업, 투자 등 기업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프리 팁스 사업 기획·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
    - 전담인력\* : 전담인력은 3인 이상 필수 구성하고, 그 중 기업지원 관련 경력\*\* 3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으로 구성
      - \* 전담인력은 프리 팁스 사업의 업무 참여율이 100%인 수행 인력을 의미
      - \*\*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 관련 이력에 한해 인정(소상공인 지원 경력 제외)
- ※ 전담조직 설치·운영을 위한 신청요건은 협약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.

## 4

##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

### 1 선정 및 관리

- (기업 선정) 창조경제혁신센터,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 등과 협업하여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선정평가 운영
- (기업 관리) 내·외부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·선정, 기업별 현황·성과관리, 민원 응대, 사업비 관리(회계 승인, 증빙자료 보완 등)
- (점검·평가) 사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(수시, 중간, 최종), 평가(성과, 최종) 및 사업비 집행·관리, 회계 정산 관리

\*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협약 종료 후 5년간 창업기업 성과관리를 지원하여야 함

### 2 프로그램 운영

※ 프로그램 예산 편성은 정부지원사업비의 50%(3억원) 이상 계상

※ 창업기업에게 현금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운영 불가

※ 자체 역량을 활용하여 1개 이상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여야 함

예) 전체 프로그램 3개(필수+자율) 중 1개 이상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서 직접 수행

- (필수 프로그램) 프리 팁스 참여기업의 수요, 분야 등에 기반한 필수 프로그램 2개(①후속투자 유치, ②웰컴 투 팁스) 운영

#### < 필수 프로그램(안) >

구분	세부 내용
후속 투자유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의 : 팁스 사업간 연계를 위한 후속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• 프로그램 : 지역 모태기금(펀드) 및 벤처펀드 등 연계 지원, IR 운영 및 후속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등</li> </ul>
웰컴 투 팁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의 : 비수도권 소재 기술 창업기업 대상 대규모 투자 연계 행사</li> <li>• 프로그램 : ①팁스 선배기업 강연, ②창업기업 및 운영사 IR 발표*, ③팁스 운영사 투자상담회 및 멘토링, ④자율 네트워킹</li> <li>* 창업기업 : 사업모델, 기술 경쟁력, 시장 진입 전략 등에 대한 IR 발표</li> <li>* 운영사 : 투자자 시각에서의 투자 관점, 성장 전략 등을 공유하는 IR 발표</li> <li>• 개최권역 :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 여건·시기 등을 감안하여 운영</li> <li>* (5극) 동남권(부산, 울산, 경남), 대경권(대구, 경북), 호남권(광주, 전남), 충청권(대전, 충북, 충남, 세종)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</li> <li>* (3특) : 강원, 전북, 제주</li> <li>• 개최회수 : 8회(예선 : 비수도권 7회, 본선 : 수도권 1회)</li> </ul>

- (자율 프로그램) 주관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

## 5

###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2026년 1월 7일(수) ~ 1월 27일(화), 16:00까지

- 1) **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**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16시 이전에 1단계 '저장'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7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, 보완 등이 허용 단, 16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는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
- 2) 신청·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스타트업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3) 반드시 접수 기한 내에 '제출 완료'하여야만 접수 처리되며, "제출완료"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

□ **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**

- (신청 방법) K-스타트업 누리집([www.k-startup.go.kr](http://www.k-startup.go.kr)) →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
- ① 'K-스타트업' 누리집 접속 → ② 회원가입(신청기관 **대표자 명의**) → ③ K-스타트업 로그인 → ④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→ ⑤ 「**2026년 프리 팁스 신규 주관 기관 모집공고**」 클릭 → 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→ ⑦ 기본정보 입력 (일반 현황 및 인력정보) 입력 →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(용량 제한 300MB) → ⑨ 제출 → ⑩ 신청내역조회 (마이페이지-사업신청현황)

\*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- (제출 서류) 제출 공문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참여 전담인력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 등(※ 우편 제출 불가)

제출 서류 목록	비고
제출 공문(신청기관)	기관장 직인본
사업계획서	
증빙자료(창업지원실적 등)	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신청·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(민간기관)	

\* 신청 이후 제출한 자료의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

## 6

## 평가 및 선정 절차

### □ 평가 방법 및 절차

- 3단계 평가 (① 서류 → ② 현장실사 → ③ 발표), 서류평가 통과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(50%), 발표평가(50%)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
- 서류평가 : 신청요건 확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를 고려하여 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
※ 단, 신청기관이 5개 기관 이하일 경우 **전체 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**

\* 신청기관 기준 : 요건검토 통과 기관 \*\* 서류평가 : 실시하지 않음

※ 신청기관이 5개 기관 이하일 경우, 2단계 평가(① 현장실사(필요시) → ② 발표평가) 운영, **발표평가(100%) 결과의 고득점 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**

\* 단, 서류평가(정량)지표는 발표평가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표(배점)에 포함

- 현장실사 :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업지원 실적 및 성과, 보유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현장 확인(필요시)

- 발표평가 : 창업기업 발굴·관리,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기관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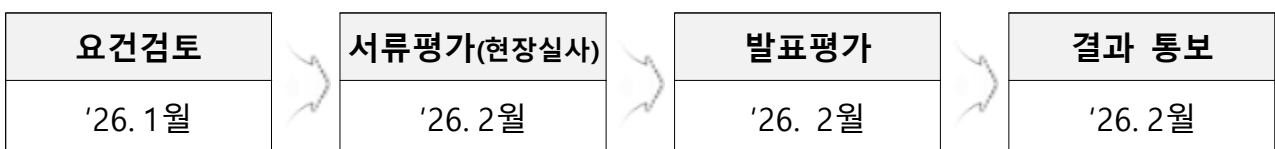
① 서류평가 합격자(발표평가 대상기관)에 한해 발표자료(PDF) 제출을 별도 요청

② 발표평가는 **전담조직의 장이 발표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\* 평가시간 : 40분 내외 (발표 20분, 질의응답 20분 내외)

- 단계별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

#### < 선정평가 운영 절차(안) >



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
\*\*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**<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(안) >**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비고	배점
서류 평가	기관 현황 및 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관 현황 및 참여 의지</li> <li>•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현황</li> </ul>	정성	20점
	기업지원 성과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기업 지원사업 수행 실적</li> </ul>	정량	30점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실적</li> </ul>	정성	
	비전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기업 지원 비전 및 전략</li> <li>• 창업기업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</li> </ul>	정성	50점
<b>합 계</b>				<b>100점</b>
발표 평가	비전 및 추진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(추진전략의 구체성 등)</li> <li>• 전담조직 구성 및 창업기업 지원역량</li> </ul>	정성	20점
	창업기업 발굴·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관리 방안</li> <li>• 창업기업 성과·사후관리 방안</li> </ul>	정성	20점
	프로그램 운영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전문성</li> <li>•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(창업기업 수요 등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구성)</li> </ul>	정성	50점
	사업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</li> </ul>	정성	10점
<b>합 계</b>				<b>100점</b>

\*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은 변경 가능성이 있음

**□ 최종 선정**

- 서류평가(50%)와 발표평가(50%)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 기관을 결정하고,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
- 단, 신청기관(요건검토 통과 기준)이 5개 기관 이하일 경우 발표평가(100%) 점수로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

◆ **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
\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[www.kised.or.kr](http://www.kised.or.kr))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\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 - \* 신청기관의 장 (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)
-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
  - \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 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
-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,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전담조직 설치·구성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함
  - \* 의무 사항 이행 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 - \*\* 기한 내 신청 요건 미충족 시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,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 - \*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 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  - 모든 참여인력 및 회계 담당 직원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필수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비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

## 8

## 참고 사항

### □ 문의처

○ (시스템 문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
○ (사업 및 공고 관련 문의)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

044-410-1715, 044-410-1722

※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(Quick Menu - 상담하기)